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58회 제1차 정례회 (2022. 9. 27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최국모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2-94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9월 5일(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2년 9월 13일(화)

### 2. 제출사유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1.10.19.)·시행(2022.4.20.)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마포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·운영토록 함.  
(안 제3조의2)

### 4. 관계법령

「지역사랑상품권법(약칭)」 제4조의2(지역상품권의 자금관리)

## 5. 검토보고

- 마포사랑상품권(이하 ‘상품권’ 이라 함)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소득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으며, 연도별 발행규모를 보면 2020년 300억 원, 2021년 500억 원, 그리고 올 해의 발행규모는 850억 원임.

### □ 마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예산

발행년도	발행규모 (억원)	발행회차	소요예산 (단위 : 천원)				비고
			계	국비	시비	구비	
계	1,650	11회	14,181,084	1,797,198	7,033,886	5,350,000	
2020년	300	4회	3,418,729	0	2,068,729	1,350,000	
2021년	500	4회	5,362,355	1,197,198	3,165,157	1,000,000	
2022년	850	3회	5,400,000	600,000	1,800,000	3,000,000	11월150억 발행 예정 포함

- 2020년 5월 1일 「지역사랑상품권법」이 제정되면서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, 판매대행점 등록과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음. 그러나 같은 법에 상품권 발행·판매·환전자금 등 운영자금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던 바 금번 개정으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단체 금고에 별도 계정<sup>1)</sup>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, 이에 따라 구 조례에 마포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자금의 보관·관리를 위해 구 금고 계정을 설치하고, 단서조항을 붙여 불가

1) 계정: 부기(簿記)의 원장(原帳)에서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, 부채, 자본, 수익, 비용, 손실에 대하여 그 증감을 계산·기록하기 위하여 설정한 단위.

피한 사유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그동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위탁업체의 계좌로 선불 충전금 등을 관리하게 하여 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 또는 낙전수입<sup>2)</sup>이 위탁업체로 귀속되게 하였음. 이를 방지하고자 상품권 발행 관련 각종 수입과 지출을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금의 투명한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됨.

---

2) 낙전수입: 상품권의 유효기간(5년)이 지났으나 환불받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.

## 【 관 계 법 령 】

### 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4조의2(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,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·판매·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“상품권운영자금”이라 한다)을 보관·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1. 10. 19.]